

정신건강전문요원 행정처분기준(제1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(제2호라목3)의 경우에는 6년을 말한다)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라.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

1) 가중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
- 나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) 감경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다)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모범적으로 일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라) 그 밖에 해당 자격에 대한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행 정 처 분 기 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자격을 받은 후 법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법 제17조제7항제1호	자격취소		

<p>하게 된 경우</p> <p>나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</p>	<p>법 제17조제7항제2호</p>	<p>자격취소</p>		
<p>다.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</p>	<p>법 제17조제7항제3호</p>	<p>자격정지 6개월</p>	<p>자격취소</p>	
<p>라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</p>	<p>법 제17조제7항제4호</p>			
<p>1)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</p>		<p>자격취소</p>		
<p>2)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</p>		<p>자격정지 6개월</p>	<p>자격취소</p>	
<p>3)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</p>		<p>자격정지 3개월</p>	<p>자격정지 6개월</p>	<p>자격취소</p>